



## 코로나19와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베트남 내 기업들을 위한 고려사항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베트남 내 사업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업무로의 복귀 (return to work)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본 문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서, 귀하의 사업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몇가지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관련 사항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이전가격 - 비즈니스 모델 및 이전가격 조사 관련 고려사항들

### 1. 이익 감소 관련

코로나19의 결과로 베트남 내 기업들에게 주어진 현 위험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이익 감소에 직면할 수 있으며 또한 적자 기업으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칙들은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능, 자산 및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요구합니다.

이익 감소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이익 감소 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야 하고, 그룹의 현 이전가격 정책과의 차이에 대한 정당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베트남 내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자사와 관계회사 간 가격 책정 정책을 검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 2. 이전가격 조사

현 부정적인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들은 여전히 실제 발생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베트남 국세청은 새로운 조사 지침을 발행하였는데, 숙박산업, 항공, 석유 및 가스 회사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반면, “고위험군” 납세자에 집중할 것을 지방 과세당국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고위험군”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이를 고려시, (상기 1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납세자의 가격 정책의 모든 변경 사항들은 탄탄한 분석, 증빙서류 및 벤치마킹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 정책에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이전가격 조사는 실시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전가격 관련 고려사항들

### 3. 현금흐름 관리 및 관계회사 간 자금조달

현재로서는 “현금이 최고”이며, 지금은 관계회사 간 자금조달 계약들이 여전히 적절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동 계약들을 재검토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몇가지 이슈들입니다.

- 만약,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자율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관계회사 간 계약들을 검토
- 그룹이 이미 자금을 재조달한 경우, 관계회사 간 이자율에 대해 벤치마킹할 새로운 외부의 비교가능한 독립적 가격들(CUP)이 있는지 여부
- 기업들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 2020 회계연도 및 향후 연도들에 대한 자금 조달 구조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EBITDA(이자, 법인세,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감소는 내부 및 외부 자금조달 계약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는 또한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에 대한 규칙의 변경이 포함된 시행령 20의 개정안이 곧 발표될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비경상적 비용들의 손금 인정

코로나19의 혼란으로 인해, 기업들에게는 구조조정, 기계 또는 자재의 진부화, 그리고 인상된 공급사슬 비용 등과 관련된 비경상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그 성격상 “임시”적인 것인지, 그리고 동 비용의 처리가 그룹의 기존 이전가격 정책과 일관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5.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간 계약

베트남 내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과 이전가격 정책의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 (즉,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및 관계회사 간 계약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현재 운영 조건들의 결과로서 기업이 다뤄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영역을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협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Lee Moo Yeol (이무열)**  
Senior Manager (한국공인회계사)

+84 (0) 90 324 0069  
mooyeol.lee@pw.c.com

**Jo Su Jin (조수진)**  
Associate

+84 (0) 78 897 0264  
jo.sujin@pw.c.com

**Judith Henry**  
Director

+84 28 3823 0796 Ext. 1525  
judith.henry@pw.c.com

**Pham Hoanh Son**  
Senior Manager

+84 28 3823 0796 Ext. 1524  
pham.hoanh.son@pw.c.com

**Annett Perschmann-Taubert**  
Partner

+84 28 3824 0113  
annett.perschmann@pw.c.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2020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PwC Vietnam Limited,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